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계	남	여		
계			23	21	2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소방	14	14	-	필수과목(3과목)	선택과목(2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구급	7	5	2	국어, *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 관련학과	2	2	-	국어,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 시험과목 세부범위

과목	세부범위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소방관계법규 (공개경쟁)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공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채용)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영어 (경력경쟁채용)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2. 응시자격

가. 일반기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4. 12. 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 소방관련학과)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됨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분 야		자 격 (경 력) 제 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제 한 없 음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자격증(면허증)소지 후 당해 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붙임5)
	소 방 관련학과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유사 학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규칙 제4조(소방관련 학과)에 따라 별표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간호사 면허 :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관련법령에 의함

▶ 시험문제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나.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6종목) 및 평가기준

종 목	성 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참조

다. 제3차 신체검사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시험(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마. 제5차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적성검사는 제3차 시험 (신체검사)과 동시에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구 분	장 소공 고	시 험일 자	합 격자발 표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 소방사	3.9(월) ~ 3.13(금)	3.9(월) ~ 3.20(금)	필기시험	3.27(금)	4.18(토)	4.29(수)
				체력시험	4.29(수)	5.04(월)	5.8(금)
				신체검사	5.8(목)	5.18(월)	5.21(목)
				면접시험	5.21(목)	5.27(수)	6.2(화)

※ 필기·체력·신체검사·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자동응답)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 유의사항

- 사진화일(JPG) 규격은 3.5cm×4.5cm (140×180Pixel, 100Kbytes미만)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의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종료 후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과목별 만점의 1%~5%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공개 경쟁 채용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 비율표 : (첨부)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www.jeju19.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히 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064-710-3514

공개경쟁채용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 내역

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자격 종 · 면 허 종 (· 면 허 종)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계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계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기사 정보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운수운물,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정비, 계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 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점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총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분	내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 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흉위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16.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7.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경력경쟁 채용 자격 및 경력제한

구 분	제 한 내 용
구 급 대 원 자	<p>○ (자격제한) 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p> <p>○ (경력제한)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style="color: red;">※ 해당분야 종사경력 인정 범위</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간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p>(1급 응급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한 구급경력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한 경력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 제3조 각 항에서 규정한 * 의료기관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119구급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득한 사실 구급대에서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한 경력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6.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7.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양호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8.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조교수로 근무한 경력 9.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로 근무한 경력(구체적인 복무확인서 필요) 10. 군(軍), 해양경찰 등에서 의무병과 및 응급 분야에 근무한 경력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첨부 6]

동 일 계 통 학 과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연락처		응시자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201 . . .

총(학)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조정점수제란**

선택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과목 간 난이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선택 과목 응시자 중 당해 수험생의 상대적인 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점수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 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과목과락 : 가산점은 가산하지 않음**

- 조정 전 점수와 조정점수 두 종류 모두가 40%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